

속초시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안)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도로명을 부여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아래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7일

속 초 시 장



1. 신설 도로구간 세부현황

예비 도로명(안)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도로현황			관할 행정 구역
				길이	폭	기초간격	
대포항희망길	대포항개발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상가 및 어민들의 번영을 희망하여 부여한 도로	대포동 (남방파제 인근)	대포동 958	1,350m	12m	20m	대포동
대포항희망1길	대포항희망길에서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대포동 (남방파제 인근)	대포동 936	951m	12m	20m	대포동

2. 의견제출 대상자 : 해당 구간의 주민 등

3. 기 간 : 2013. 3. 7. ~ 2013. 3. 21 (2주간)

4. 방 법 : 방문 또는 서면 (별첨 의견수렴서)

5. 추후절차 :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속초시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고함

6. 접 수 처 :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새주소공간정보(☎ 639-2041, 2040)